

1. 개정 이유

「관광진흥법」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(23.8.8.)에 따른 시행령 마련(시행일 '24.2.9.)

- * 관광진흥법 제34조의3(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)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(이하 “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”이라 한다)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 3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2]의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(제31조의3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 예정
- 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3(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시설)
법 제3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을 설치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”이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2]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의3 <신 설>	제31조의3(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시설) 법 제3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을 설치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”이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2]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